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1994. 2. 24.  
교육사회위원회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2월 14일
  - 회부일자 : 1994년 2월 15일
3.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42호, '93.12.31.)에 의거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골 자
  - 직급명칭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보"를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함(안 제3조 및 별표).
5. 검토 의 건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42호, '93.12.31.)에 의거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